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China Non Tariff Barriers Issue

중국, 간장 및 식초를 대상으로 강화된 감독·관리 방침 시행 공고



중국 시장감독총국, 간장과 식초의 품질 관리 및 감독·관리 방식 강화

2021년 6월 23일, 중국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간장 및 식초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및 안전 이슈의 최적화를 위하여 《간장·식초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关于加强酱油和食醋质量安全监督管理的公告), 이하 ‘강화공고’》를 발표함

《강화공고》는 간장과 식초의 사용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불법 제품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기업, 현지 시장 감독 부서, 이해 관계자의 감독·관리 방식을 명시함. 간장과 식초의 제품 사용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강화공고》는 규정 발표일인 6월 23일부터 시행됨

(1) 간장의 사용기준

- 국가표준(GB 2717-2018)에 따른 정의 : 대두(大豆) 혹은 탈지 대두, 밀 혹은 밀가루 혹은 밀기울을 주원료로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독특한 색·향·맛을 지닌 액체 조미료
- 주의사항 : 완전한 발효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해야 하며, AHVPS(Acid hydrolyzed vegetable protein seasoning) 등의 성분은 첨가할 수 없음
- 라벨 표시사항 :
 - ① 눈에 띄는 위치에 ‘간장’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식품 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② ‘조제간장’ 표기를 폐지하고, 간장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은 ‘간장’으로 표기할 수 없음

(2) 식초의 사용기준

- 국가표준(GB 2719-2018)에 따른 정의 : 전분, 당을 함유한 각종 재료와 식용 주정(酒精)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액체 조미료
- 주의사항 : 완전한 발효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해야 하며, 아세트산등의 성분은 첨가할 수 없음
- 라벨 표시사항 :
 - ① 눈에 띄는 위치에 ‘식초’를 명확히 표기, 식품 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② ‘조제식초’ 표기를 폐지하고 식초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은 ‘식초’로 표기할 수 없음

불법 제품에 대한 감독·관리 방침 강화, 수출 전 사용기준 숙지해야

2020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간장(HS CODE: 2103100000)과 양조식초(HS CODE: 2209001000)의 수출 규모는 각 126만 달러, 108만 달러를 기록함

《강화공고》의 감독·관리 방침에 따르면, 사용기준에서 금지한 AHVPS, 아세트산 성분 등을 제품에 첨가하거나 라벨 허위표기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사를 통해 처벌하며, 공업용 소금 등 비식용물질을 사용한 사람은 중국 공안 기관에 이송됨. 따라서 간장 또는 식초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강화공고》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조방식과 및 라벨 표시 등에 주의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간장·식초 사용기준 주요 내용 (간장·식초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간장	식초
	GB 2717-2018	GB 2719-2018
국가표준	- 대두, 탈지 대두 및 밀, 밀가루, 밀기울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독특한 색·향·맛을 지닌 액체 조미료	- 전분, 당을 함유한 각종 재료와 식용 주정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액체 조미료
제조 시 주의사항	- 완전한 발효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	
	- AHVPS 등 성분 첨가 불가	- 아세트산 등 성분 첨가 불가
라벨 표시사항	- 눈에 띄는 위치에 '간장' 혹은 '식초' 명확히 표기 - 식품 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 - '조제간장' 및 '조제식초' 표기 폐지 - 간장 혹은 식초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은 '간장' 또는 '식초' 표기 불가	

출처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 加强酱油和食醋质量安全监督管理的公告, 2021. 06. 23

중국식품공업협회(中国食品工业协会), 市场监管总局关于 加强酱油和食醋质量安全监督管理的公告 (2021年第23号), 2021. 06. 30